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9. 3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1년 8월 19일
- 나. 발의자: 이미자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- 라. 상정일자: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8. 3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미자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 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 -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 - 주거복지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 -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안건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은
 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」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
 -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주거약자 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

(이미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 378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8월 일

발 의 자: 이미자 의원 외 5명

1. 제안이유

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라. 주거복지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마.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

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주거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(2021. 8. 10. ~ 8. 17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거복지”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주거복지 지원대상자”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

다.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

라. 그 밖에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

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주거복지사업 계획
4.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주거복지사업)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거복지 상담·정보제공 및 사례관리
2.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
3.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
4.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
5.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
6.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

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
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주거복지위원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·변경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